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
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
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류 및 식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류 및 식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
가 그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교육
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의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
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
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8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저탄소제품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0-180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저탄소제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
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
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장기 감축목
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률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저탄

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제4조(업무규정과과의 관계)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중 인증유효기간이 이 고시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 잔여 인증유효기간을 인정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중 인증유효기간이 이 고시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저탄소제품 인증 당시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환경성정보만 산정하여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 당시 보고서를 활용한 다른 환경성 정보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이 되면 잔여 인증유효기간까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인정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

⑤ 종전의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중 기본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 환경부고시제2020-18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7 일원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